

民生治安과 搜查警察力の 向上

— 任用과 教育訓練體制를 중심으로 —

李 璜 雨
(東國大 教授)

I. 序 論

최근 우리 나라는 産業化, 都市化, 國際化, 民主化 등 社會環境의 급격한 변화로 말미암아 治安需要가 급격히 증대되어 社會安定을 이룩하는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로 1960年代初부터 추진된 經濟開發戰略은 産業化와 都市化를 촉진시켜 國民生活與件의 物量的 成長을 가져 왔으나 이에 따른 價値觀의 流動化와 多元化, 享樂的 風潮 등 精神生活面에서의 變化는 새로운 각종 社會病理現象을 야기시켜 治安需要의 급격한 증대를 가져왔다.

둘째로는 1980年代初 國民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夜間通行禁止의 해제 및 校服의 自律化와 함께 國際化時代에 따른 開放化 措置로 治安行政의 모든 分野가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셋째로는 20여年間 進展되어온 産業化, 都市化와 함께 최근의 民主化要求에 따른 社會的 葛藤과 緊張은 安定管理機能을 國家的 課題로 부각시켰다.¹⁾

이러한 轉換期的 症候는 社會紀綱과 法秩序가 해이해 지게 되고 犯罪現象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警察의 중요한 機能인 犯罪豫防機能과 搜查機能을 어떻게 조화시키면서 제한된 資源을 極大化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다.

1) 李璜雨, “刑事司法政策의 研究課題 —警察行政學의 觀點—”, 형사정책연구 창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p. 42.

犯罪豫防은 어느 국가나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가운데 하나이지만 이 문제 또는 犯罪學중에서 가장 開發이 안된 分野중의 하나이다. 현재 豫防이라는 이름아래 나와 있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종종 사후약방문식인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는 犯罪豫防理論, 人力, 資源 따위만 있으면 곧 行動化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組織도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理論이나 人力, 資源, 그리고 좋은 意圖만으로는 안된다. 協同이나 機能의 統合, 목표달성을 위한 질서정연한 節次를 용이하게 하는 過程과 프로그램, 그리고 組織의 적당한 기본틀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흔히 날로 증가하는 犯罪問題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物量的인 警察人力의 증가를 요청하고 있지만 警察人力의 증가를 위해서도 고려해야할 變數로서는 人口增加의 變化, 犯罪의 영향, 警察管轄區域의 道路길이, 交通事故數, 그리고 警察의 業務量²⁾ 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그 기초가 되어야 한다.

犯罪의 搜查活動에 있어서도 犯罪豫防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警察의 人的 資源이나 物的 施設, 그리고 搜查環境에 대한 體系的이고 科學的인 분석이 그 밑바침이 되어야 한다.

1960年代 後半부터 犯罪에 대한 일반 국민의 공포가 경찰의 關心을 크게 하였다. 美國에서는 1965년 존슨 大統領이 對犯罪鬭爭을 선언한 이래 많은 노력과 연구성과³⁾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犯罪은 끊임없이 증가하여 레이건 大統領도 1981년 9월에 개최된 國際警察長協會에서 각종 犯罪가 熱病처럼 번져나가 심각한 社會問題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刑事司法制度의 改革을 제창한 바 있다.

2) Philip John Stead, The Police of Britain (N. Y.: Macmillan Publishing Co., 1985), pp. 105~106.

3) 대표적인 경찰에 관한 研究成果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President's Commission on Law Enforcement and Administration of Justice, Task Force Report; The Police, Washington, D. 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7.

② President's Commission on Law Enforcement and Administration of Justice, The Challenge of Crime in a Free Society, Washington, D. 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7.

③ National Advisory Commission on Criminal Justice Standards and Goals; Police, Washington, D. 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3.

우리 나라에서도 1990년 大統領이 對犯罪戰爭을 선포하여 汎政府的 次元에서 犯罪統制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適法節次에 의한 公權力の 權威回復과 국민의 安全欲求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國家的 課題로 부각되어 이에 대응할 警察行政體制의 改善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이것은 곧 警察行政이 단순한 執行, 管理機能을 주로 하는 現象維持, 秩序維持, 統制 등의 安定 維持者로서의 機能은 물론이고 급격한 社會變化에 따르는 環境으로부터의 挑戰을 해결하며 적극적 능동적으로 변화, 발전을 도모하려는 變化擔當者로서의 機能까지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機能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절대적인 警察人力과 豫算의 不足, 낙후된 警察裝備, 낮은 報酬體系, 과중한 勤務時間과 業務量, 그리고 각종 助長行政機關에 대한 協調業務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우리 주변에는 年間 100万件이 넘는 犯罪가 발생하고 있으며 質的으로도 知能化, 暴惡化, 機動化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暴力과 無秩序가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에 맞서 警察力을 강화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국민 모두의 관심사의 하나이다.

여기에서는 우리 나라의 社會變化에 따른 治安狀況과 이에 대응하고 있는 警察力の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犯罪統制를 위한 搜查警察力の 問題點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接近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라는 體感治安을 위해 搜查警察人力의 任用과 教育訓練體制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하기로 한다.

물론 우리가 기대하는 體感治安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警察行政體制의 全般的인 分析과 治安環境에 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하나 결국에는 組織內의 構成員이 構造, 技術, 業務의 內容과 水準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人的 資源의 能力發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여기에서는 搜查警察人力의 任用과 教育訓練體制에 限定하여 그 政策代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治安狀況과 警察力의 對應

1. 犯罪의 量的 增加

警察이 犯罪를 豫防하고 巡察이나 犯罪搜查의 有用한 資料로서 이용되는 犯罪 및 犯罪者에 대한 情報은 일반적으로 犯罪分析(Crime analysis)에 의거하고 있다. 犯罪 및 犯罪者에 대한 警察의 情報가 犯罪分析에 의하여 알려지기 때문에 犯罪分析機關의 중요한 기능은 그 地域에서 발생한 과거나 현재의 犯罪에 관한 資料를 분석하여 地域犯罪의 形態를 인식하며 미래의 犯罪形態를 예측하는 것이며, 警察情報機關의 중요한 기능은 組織犯罪 혹은 다른 犯罪集團의 활동을 인식하며 그러한 犯罪의 범위나 크기에 관한 情報判斷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들 두 기관은 준비된 戰術·戰略情報에 의거하여 경찰기관으로 하여금 국민에게 만족할만한 奉仕를 하도록 계획을 세우게 된다.⁴⁾

1980년대에 들어와 경찰기관에서 인지한 總犯罪의 量的 增加는 <表 II-1>과 같다.

<表 II-1> 總犯罪發生推移

區分 年度	總 犯 罪		刑 法 犯		特 別 法 犯	
	發生件數	指數	發生件數	指數	發生件數	指數
1980	620,710	100	410,461	100	210,249	100
1981	631,950	102	459,637	112	172,313	82
1982	655,183	106	501,306	122	153,877	73
1983	786,939	127	539,342	131	247,597	118
1984	784,708	127	536,358	131	248,350	118
1985	794,777	128	539,166	131	255,611	122
1986	818,718	132	544,767	133	273,951	130
1987	902,764	145	583,231	142	319,533	152
1988	954,128	154	593,707	145	360,421	171
1989	1,043,901	168	611,694	149	432,207	206

資料:내무부치안본부, 경찰통계연보, 1990, pp.182~183.

4) Paul B. Weston, Police Organization and Management (Pacific Palisades, California:Goodyear Publishing Co., 1976), p.35.

1980년에 620,710件的 總犯罪가 발생했던 것이 1989년에는 1,043,901件으로 증가되었으며 이것을 指數로서 살펴보면 198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989년에는 68%가 증가하여 같은 기간의 人口 成長率 11%에 비하면 犯罪의 증가속도가 人口의 증가속도보다 6배나 빠르게 진행되어 온 것이다. 刑法犯의 경우에는 49%의 增加로 인구증가의 4배에 달하고 있지만 特別法犯의 경우는 106%의 증가로 인구증가의 약10배로써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다.

刑法犯의 증가는 미온적인 犯罪對策만으로는 부족하고 社會가 변화하는데 따라 근원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課題를 던져준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政府의 社會紀綱을 위한 강력한 犯罪統制政策이 犯罪統計上 증가현상을 나타냈다고도 할 수 있다. 한편 特別法犯의 폭발적인 증가는 급속한 經濟成長過程에서 각종 不法 經濟活動 및 社會活動이 크게 증가한데 따른 法令의 制定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된다.

2. 犯罪의 質的 變化

1) 犯罪의 凶暴化 傾向

強力犯은 國民의 生命, 身體에 직접적인 危害를 주는 殺人, 強盜, 強姦, 放火 등의 凶惡犯을 일컫는 바 <表Ⅱ-2>에 의하면 強力犯罪는 지난 10年間 42%의 증가현상을 나타내 刑法犯의 전체 증가율 21%보다 2배의 높은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다.

強力犯 가운데 殺人은 1980년에 527件(指數100)이 발생하였으나 가벼운 增減을 나타내면서 1989년에는 540件(指數 102)이 발생하여 人口增加率과 비교하면 踏步狀態에 있다고 할 수 있다. 強盜는 동기간중 64%나 크게 증가하였는 바 평소 凶器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犯行時 발각되는 경우 逃走 또는 證據湮滅의 목적으로 強盜로 돌변하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시민에게 가장 공포감을 주고 있다. 強姦은 동기간 중 24%가 증가하였는 바 이러한 현상은 선정적인 영화와 독서물의 범람, 그리고 性的 자극을 고조시키는 유흥 접객업소의 범람 및 家族機能의 상실로 인한 가족의 社會統制機能의 弱화에 기인한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피해자의 수치심을 이용

《表Ⅱ-2》 強力犯罪發生推移

區分 年度	計		殺 人		強 盜		強 姦		放 火	
	發生件數	指數	發生件數	指數	發生件數	指數	發生件數	指數	發生件數	指數
1980	6,565	100	527	100	2,684	100	3,003	100	351	100
1981	7,095	108	568	108	2,680	100	3,446	115	401	114
1982	7,831	119	498	94	2,720	101	4,164	139	449	128
1983	7,844	119	453	86	2,887	108	3,973	132	491	140
1984	8,104	123	551	105	3,007	112	4,051	135	495	140
1985	8,480	129	541	103	3,288	120	4,118	137	463	132
1986	7,984	121	565	107	2,983	111	3,809	127	527	150
1987	8,032	122	562	107	3,274	122	3,667	122	529	150
1988	8,399	128	539	102	3,765	140	3,510	117	585	167
1989	9,296	142	540	102	4,403	164	3,726	124	627	179

資料:내무부치안본부, 경찰통계연보, 1990, pp.184~185.

하여 犯行을 은폐할 목적으로 性暴行하는 악랄한 手法을 자행하고 있어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放火는 동기간중 79%의 증가로 強力犯罪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바 橫領이나 犯行의 은폐 등을 목적으로 악랄하게 자행되고 있다.

1989년의 경우 殺人은 1日平均 1.48件, 強盜는 12.1件, 強姦은 10.2件, 放火는 1.7件이 발생한 셈이다.

2) 犯罪의 年少化 傾向

刑法犯중 少年犯이 차지하는 구성비율은 1980년이래 10년동안 대체로 15~18%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犯罪의 年少化 傾向이 나타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表Ⅱ-3>에 의하면 사회의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少年強力犯은 1980년 3,372명에서 1989년 4,361명으로 1980년을 기준으로 할 때 1989년에는 29%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 強力犯罪者의 구성비율도 41.1%나 차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殺人은 21.3%, 強盜는 50.9%, 強姦은 5.9%, 放火는 81.8%의 증가현상을 가져왔다. 특히 전체 強盜犯中 少年犯이 차지하는 비율은 52.8%이며 전체 強姦犯中 少年犯이 차지하는 비율도 37.3%에 이른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충격을

많이 주는 強力犯罪의 많은 부분이 靑少年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는 사실은 靑少年犯罪豫防을 위한 既成世代의 無氣力을 반영한 것이다.

《表Ⅱ-3》 少年強力犯 推移

年度 區分	計	殺人	強盜	強姦	放火
1980	3,372	75	1,695	1,580	22
1981	4,107	64	1,779	2,220	44
1982	4,481	81	1,740	2,617	43
1983	5,149	95	2,109	2,889	56
1984	4,993	63	2,141	2,750	39
1985	5,120	91	2,277	2,719	33
1986	4,572	84	2,236	2,207	45
1987	3,782	92	1,994	1,661	35
1988	4,356	135	2,598	1,566	57
1989	4,361	91	2,557	1,673	40

資料:내무부치안본부, 경찰통계연보, 1990, p.168.

3) 再犯率의 急增

〈表Ⅱ-4〉에 의하면 總犯罪者가운데 初犯者는 지난 10년동안 27.6%가 증가한데 비하여 前科者의 再犯率은 138.9%나 증가하였으며 전체 犯罪者 가운데에 前科者가 차지하는 비율도 1980년의 29.8%에서 1989년에는 44.3%로 그 비중이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사회의 전체 犯罪者중 과반수에 가까운 犯罪者가 前科者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어서 社會安全에 더욱 커다란 不安要素가 되고 있다.

《表Ⅱ-4》 前科者의 再犯 實態

年度 區分	1980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總犯罪者	649,922	808,901	817,315	822,498	850,196	926,709	983,184	1,045,022
初犯者	456,207	501,693	478,452	472,044	487,538	517,556	549,170	582,331
前科者	193,715	307,218	338,863	350,454	362,658	409,153	434,014	462,691
(構成比)	29.8	38.0	41.5	42.6	43.7	44.2	44.1	44.3

資料:治安本部, 犯罪分析

3. 警察力の對應

警察이 보다 효율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身體, 그리고 財産을 보호하고 사회의 安寧秩序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미 발생한 犯罪를 檢舉, 鎮壓하는 事後的인 措置보다는 犯罪가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豫防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警察이 그 所任을 성실히 수행했는가 하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은 犯罪가 발생한 후 犯罪者의 檢舉實績이 어느 정도에 달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측정될 수 밖에 없다. 모든 發生犯罪를 100%로 검거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발생한 犯罪事件을 전부 검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人力과 豫算이 投入되어야 한다. 그러나 搜查活動에 投入이 가능한 人力과 豫算에는 限界가 있다.

〈表Ⅱ-5〉 總犯罪 發生 및 檢舉狀況

區分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發生件數	620,710	631,950	655,183	786,939	784,708	794,777	818,718	902,764	954,128	1,043,901
檢舉件數	538,314	553,453	575,556	651,816	676,442	679,704	698,178	790,949	847,618	917,970
檢舉率(%)	86.7	87.6	82.8	82.8	86.2	85.5	85.3	87.6	88.8	87.9

資料:내무부치안본부, 경찰통계연보, 1990, p. 182.

〈表Ⅱ-5〉에 의하면 1980년부터 1989년까지 10年間 總犯罪 檢舉率은 年平均 86.1%로서 높은 實績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劣惡한 與件속에서도 警察 전체의 使命感과 獻身的인 努力에 따른 결과이다.

우리 나라 警察의 檢舉實績을 先進諸國과 비교해 보면 〈表Ⅱ-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殺人的인 경우에만 日本보다 뒤질 뿐 가장 높은 檢舉率을 보이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發生率(人口 10万名當 犯罪認知件數)에 있어서 殺人的인 경우 우리 나라는 日本보다 다소 높지만 美國은 우리의 5.9倍, 英國은 3.9倍, 獨逸은 3.1倍, 佛蘭西는 2.9倍나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檢舉率에 있어서도 日本의 97.6% 다음으로 우리 나라(95.2%)가 차지하고 있으며 獨逸(94.0%), 佛蘭

〈表Ⅱ-6〉 主要犯罪의 國際比較(1987)

區 分	美 國	英 國	西 獨	佛蘭西	日 本	韓 國
殺 人						
認知件數	20,100	2,764	2,651	2,286	1,645	562
發生率	8.3	5.5	4.3	4.1	1.3	1.4
檢舉率	70.7	81.5	94.0	93.0	97.6	95.2
強 姦						
認知件數	91,110	2,471	5,281	3,196	1,823	3,667
發生率	37.4	4.9	8.6	5.8	1.5	8.8
檢舉率	52.9	70.7	71.2	85.6	87.4	96.0
竊 盜						
認知件數	12,024,800	2,906,141	2,790,849	1,944,367	1,364,796	101,484
發生率	4,940	5,803	4,565	3,503	1,116	24.5
檢舉率	17.7	29.3	27.8	16.3	60.2	63.2

資料: 日本 法務總合研究所, 犯罪白書, 平成元年版, pp. 332~336.
 내무부 치안본부, 경찰통계연보, 1989, p. 191.

西(93.0%), 英國(81.5%), 美國(70.7%)의 順이다.

強姦에 있어서는 發生率이 美國은 우리의 4.2배나 되지만 그외의 다른 先進國보다도 훨씬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日本보다는 5.8배이상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檢舉率에 있어서는 韓國(96.0%), 日本(87.4%), 佛蘭西(85.6%), 獨逸(71.2)%, 英國(70.7%), 美國(52.9%)의 順이다.

또한 竊盜에 있어서는 發生率이 우리 나라가 가장 적어 美國은 우리의 201.6배, 英國은 236.8배, 獨逸은 186.3배, 佛蘭西는 142.9배, 日本은 45.5배나 된다. 그리고 檢舉率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63.2%이고 다음이 日本의 60.2%이지만 英國은 29.3%, 獨逸은 27.8%, 미국은 17.7%, 佛蘭西는 16.3%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가 先進諸國과 비교하여 犯罪發生率이 낮고 檢舉率이 높다고 하여 우리나라의 治安水準이 확보되어 있다고 評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美國의 警察이 武器를 휴대하고 巡察을 하고 있어도 治安은 만족할만한 수준에 있지 않고

英國의 警察은 武器를 휴대하지 않고 巡察을 하고 있어도 충분히 治安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을 볼 때 犯罪分析에 의한 統計的인 數値만 가지고 分析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犯罪 및 犯罪性의 測定方法,⁵⁾ 搜查技法上의 問題, 그리고 犯人의 自首에 의해 檢擧率이 높은 것인지 또는 第三者의 提報에 의하여 檢擧率이 높은 것인지 등에 대한 分析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는 警察人力의 不足,⁶⁾ 搜查裝備와 豫算의 未洽, 他部處協調業務의 增加, 犯罪發生時 申告意識의 缺如 등 다른 나라와는 어려운 與件에 놓여 있다.

Ⅲ. 搜查警察의 任用體制

1. 採用作用的 改善

美國의 저명한 警察行政學者인 「윌슨」(O. W. Wilson)은 搜查人員의 數는 全體 警察人員의 약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이는 豫防活動의 生産성과 函數關係에 있기 때문에 나라마다 사정은 다를 것이다.

1990년 5월말 현재 우리 나라 搜查警察人力의 配分狀況은 全體 警察人力 73,226명중 12,995명으로 17.7%를 차지하고 있다. 12,995명 가운데 調査要員은 2,341명, 外勤刑事가 8,532명, 鑒識要員은 322명, 搜查要員(留置場 看守포함)은 1,800명이며 內勤은 34.2%이고 外勤은 65.7%이다. 또한 警衛이상의 幹部는 1,555명으로 總現員의 12%를 차지하며 警査이하의 非幹部級은 11,440명으로 88%에 해당된다.

搜查警察官의 學歷水準을 보면 85.1%가 高卒이며 大卒이상은 9.6%에 불과하고 中卒의 경우도 2.8%나 된다.

5) 이것에 관해서는 Harold E. Pepinsky, Crime Control Strategies(N. Y.: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pp. 30~47 參照.

6) ICPO에 의하면 1988년의 警察官 1人當 人口負擔率은 日本 555명, 英國 395명, 美國 355명, 이태리 327명, 獨逸 316명, 佛蘭西 291명인데 우리 나라는 643명에 해당되어 獨逸이나 佛蘭西의 2배이상이나 되는 상황에 있다. 警察廳, 警察白書, 平成元年版, p. 331.

英國의 警察은 武器를 휴대하지 않고 巡察을 하고 있어도 충분히 治安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을 볼 때 犯罪分析에 의한 統計的인 數値만 가지고 分析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犯罪 및 犯罪性의 測定方法,⁵⁾ 搜查技法上의 問題, 그리고 犯人의 自首에 의해 檢擧率이 높은 것인지 또는 第三者의 提報에 의하여 檢擧率이 높은 것인지 등에 대한 分析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는 警察人力의 不足,⁶⁾ 搜查裝備와 豫算의 未洽, 他部處協調業務의 增加, 犯罪發生時 申告意識의 缺如 등 다른 나라와는 어려운 與件에 놓여 있다.

Ⅲ. 搜查警察의 任用體制

1. 採用作用的 改善

美國의 저명한 警察行政學者인 「윌슨」(O. W. Wilson)은 搜查人員의 數는 全體 警察人員의 약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이는 豫防活動의 生産성과 函數關係에 있기 때문에 나라마다 사정은 다를 것이다.

1990년 5월말 현재 우리 나라 搜查警察人力의 配分狀況은 全體 警察人力 73,226명중 12,995명으로 17.7%를 차지하고 있다. 12,995명 가운데 調査要員은 2,341명, 外勤刑事가 8,532명, 鑒識要員은 322명, 搜查要員(留置場 看守포함)은 1,800명이며 內勤은 34.2%이고 外勤은 65.7%이다. 또한 警衛이상의 幹部는 1,555명으로 總現員의 12%를 차지하며 警査이하의 非幹部級은 11,440명으로 88%에 해당된다.

搜查警察官의 學歷水準을 보면 85.1%가 高卒이며 大卒이상은 9.6%에 불과하고 中卒의 경우도 2.8%나 된다.

5) 이것에 관해서는 Harold E. Pepinsky, Crime Control Strategies(N. Y.: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pp. 30~47 參照.

6) ICPO에 의하면 1988년의 警察官 1人當 人口負擔率은 日本 555명, 英國 395명, 美國 355명, 이태리 327명, 獨逸 316명, 佛蘭西 291명인데 우리 나라는 643명에 해당되어 獨逸이나 佛蘭西의 2배이상이나 되는 상황에 있다. 警察廳, 警察白書, 平成元年版, p. 331.

그리고 搜查部署에 勤續한 年數가 5年이하인 要員은 47%를 차지하고 있다.

1973년 美國의 「刑事司法標準 및 目標에 관한 國家諮問委員會」는 모든 警察機關에 대하여 자질이 있는 警察志願者들의 選拔을 위하여 公式的인 節次를 채택하여야 하며 이러한 節次는 知能 혹은 適性에 관한 筆記試驗, 面接試驗, 身體檢査, 心理檢査, 그리고 精密背景調査를 포함하여야 할 것을 勸告하고 있다.⁷⁾ 그런데 우리나라 搜查警察要員의 新規採用은 科學的이고 實用性있는 人力計劃에 따른 制度化된 募集은 없었다.

公開採用으로는 1962년 大卒者 360명을 巡警으로 任用하였고, 1981년에는 大卒者 83명을 選拔하여 警衛로 任用한 것 뿐이었다. 特別採用으로는 鑒識要員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1983년 7명, 1984년 2명의 大學生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選拔한 실적이 있다.⁸⁾

이러한 현상은 1982년 內務部例規 第549號로 「搜查要員 任用規程」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었던 바 이 규정에서의 搜查要員 資格基準이 警察經歷 3년이상인 자 가운데 심사로 選拔하도록 되어 있어 外部로부터의 任用은 사실상 봉쇄되어 있기 때문이다.

1987년에는 「搜查要員 管理規程」(內務部 例規 第644號)을 제정하여 그 資格要件을 강화하고 있다.

첫째로 搜查要員은 國家觀이 확고하고 忠誠心과 使命感이 투철한 자로서

둘째로 搜查要員의 資格基準은

- ① 大學卒業者로서 警察基本教育을 이수한 者
- ② 高等學校卒業者로서 警察經歷 3년이상인 者
- ③ 高等學校 卒業者로서 搜查經歷 1년이상인 者

셋째로 搜查要員은 知的 能力과 論理的 思考力, 推理力, 忍耐力 및 精神的 安定性 등을 측정 진단하여 작성된 綜合適性檢査 결과 適合判定을 받아야 한다.

7) National Advisory Commission on Criminal Justice Standards and Goals, Police(Washington, D.C.:U.S.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3), p.337.

8) 警察大學附設 搜查幹部研修所, 搜查警察의 專門化 方案, 1986, p.21.

이와 같은 資格要件을 갖춘 자중에서 搜查要員 選拔審査委員會의 審査를 거쳐 추천권자의 추천으로 搜查要員 缺員時에 이를 充員하도록 하고 있다.⁹⁾

따라서 우리 나라 搜查要員의 선발은 외부로부터의 新規採用은 아주 희소하게 이루어졌고 대부분 내부로부터 수시로 充員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유능한 人的 資源을 수사조직에 끌어들이기 위한 選拔에 있어서의 公式的인 節次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選拔節次에 있어서 支援者의 身體的 傳記의 人口學的 特性이나 心理檢査, 狀況的 檢査 등의 試驗方法을 통한 選拔過程¹⁰⁾은 搜查要員 充員時에 제대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理想的인 搜查要員은 「셜락 홈즈」(Sherlock Holmes)의 知的力量(intellectual capacity), 「어네스트 헤밍웨이」(Ernest Hemingway)의 記述能力(writing ability), 그리고 「제임스 본드」(James Bond)의 勇氣(courage)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搜查要員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資質은 철저함과 강인성(thoroughness and tenacity)에 있다¹¹⁾고 한다.

어떤 組織이던 그 組織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유능한 人材를 選拔採用하고 그들의 지속적인 能力開發을 통해 生産性的 向上에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다. 특히 採用過程에서 유능한 人材를 選拔하지 않는 한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資質이 우수한 人力을 양성하기란 어려운 것이며 搜查要員의 選拔基準이 資格과 能力에 優先權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유능한 要員을 획득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資質이 있는 要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과 사람을 잘 융화시키고 組織活動의 統合을 촉진하는데 충실히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 搜查專門人力의 需給과 適正管理를 위하여 合理的인 人力計劃이 수립되어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人力計劃은 人力供給과 治安需要에 대한 分析和 豫測에

9) 搜查要員管理規程 第4條, 第5條, 第6條.

10) 李璜雨, "警察公務員의 選拔模型에 관한 研究," 行政論集 第十五輯, 東國大學校 行政大學院, 1986, p. 69.

11) Joseph Deladurantey and Daniel Sullivan, Criminal Investigation Standards (N. Y.: Harper & Row, 1980), p. 17.

따라 合理的 定員算出基準을 標準化하여 搜查業務의 요청에 부합되는 人力을 適時性있게 효율적으로 획득하여야 한다.

(2) 募集方法을 搜查要員의 缺員이 생기면 현재의 警察經歷者 중에서 選拔하는 閉鎖體制에서 적정한 比率에 의한 開放體制로 充員하도록 接近시켜야 한다.

특히 搜查와 같은 專門分野는 系列別 募集으로 計劃人員을 정기적으로 募集할 것이 바람직하며 年初에 신문, 라디오, TV, 公報, 포스타, 영화 등을 통하여 大學은 물론 私設學院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弘報活動을 전개하여 적극적인 모집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募集結果에 대한 事後評價를 반드시 실시해야 할 것이다.¹²⁾

또한 앞으로 급변하는 環境, 다양화되고 專門化되어 가는 搜查業務, 知能化되어 가는 犯罪手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專門大學이상 高等教育履修者에 대한 誘致를 위해서 學歷要件을 강화하여야 하며 장학금을 지급하여 特別採用하는 方法 등도 적극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警察大學生의 募集도 法學科 行政學科이외에 警察學科를 신설하여 搜查職에 일장비율을 募集할 것이 기대되며 司試出身者는 人權保護官 또는 法務官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3) 選拔方法도 그 效用性を 높이기 위하여 다양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1차 시험으로서의 身體檢査는 身長과 體重 등 醫學的 健康基準設定도 그 妥當性이 검토되어야 하며 體力檢査에 강인성과 기민성 측정¹³⁾이 보다 正當化되어야 한다.

2차 시험으로서의 筆記試驗도 試驗科目의 조정은 물론 出題에 있어서도 그 效用性を 높여야 하며 學校의 추천, 성적 등이 選拔過程에서 더 많은 比重을 갖게 하여야 한다. 또한 志願者의 價値觀과

12) Commission on Accreditation for Law Enforcement Agencies, Standards for Law Enforcement Agencies: The Standard Manual of the Law Enforcement Agency Accreditation Program, April 1984, pp. 31-35.

13) Calvin J. Swank and James A. Conser, The Police Personnel System (N. Y.: John Wiley & Sons, 1983), pp. 136-138; William J. Bopp and Paul M. Whisenand, Police Personnel Administration (Boston: Allyn and Bacon, 1980), p. 88.

態度, 意味 등의 測定¹⁴⁾, 性格檢査 등의 人性試驗도 늘려 나가야 하며 模擬演習式 試驗(assessment center)¹⁵⁾과 같은 現代的 技法들도 적용해 보아야 할 것이다.

3차시험으로서의 面接試驗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能力, 發展性 및 適格性を 측정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面接委員의 試驗內容이 筆記試驗에서 평가했던 知識이나 技術에 대해 되풀이하여 물어 보는 형식적인 절차에서 標準的 質問의 事前準備, 面接技法의 開發, 面接委員의 訓練 등을 통하여 가능한 한 效用度を 높여야 할 것이다.¹⁶⁾

(4) 新規採用者에 대한 試補任用制度(probationary system)가 유효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이것은 採用豫定職의 업무를 1년 동안 실제로 수행할 기회를 주고 이를 관찰해서 그 適格性を 判定하는 것이지만 이 제도는 實踐的 內實이 거의 없어 名目上의 제도로 전락한 감이 있다. 따라서 試補制度의 選擇機能을 강화하여야 하며 初任補職에서의 選擇機能도 강화해야 한다.

2. 內部任用作用의 改善

警察公務員의 內部로부터의 任用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고 또 중요시되고 있는 것은 轉補와 昇進이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警察公務員에 있어서 轉補는 동일 職位에서의 長期勤務로 인한 직무수행의 침체현상을 방지하여 창의적이며 활력있는 職務成果의 증진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지나치게 잦은 轉補로 인한 能率低下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정이 없는

14) Charles D. Spielberger, Police Selection and Evaluation: issues and techniques(Washington, D.C.: Hemisphere Publishing Co., 1979), pp. 155~165.

15) Jack Aylward, "Psychological Testing and Police Selection",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Administration, Vol. 13, No.3, September 1985, p.204.

16) Steve Falkenberg, Larry K. Gaines and Terry C. Cox, "The Oral Interview Board: What Does it Measure?",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Administration, Vol. 17, No 1, March 1990, p.32.

한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搜查要員을 警察官署間에 이동할 때에는 해당 搜查部署에 배치하도록 하며 결격사유가 없는 搜查要員을 他部署에 轉補할 때에는 직근상급기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여¹⁷⁾ 이를 엄격히 제한한다. 그러나 搜查職務教育成績이 수료점수 미만일 때에는 他部署에 轉補하도록 하고 搜查職務教育을 이수한 자는 해당 搜查部署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¹⁸⁾

警察機關에 搜查要員을 얼마나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標準은 없다. 다만 美國 刑事司法標準 및 目標에 관한 國家諮問委員會는 특별한 需要가 존재하지 않는 한 警察機關에 75명 혹은 그 이상의 人力을 보유하고 있는 警察官署에 搜查要員을 배치할 것을 勸告하고 있다.¹⁹⁾

우리 나라의 경우 대도시 警察署는 搜查要員이 대부분 100명을 초과하고 있으며 郡單位 警察署는 10~20명 정도로 커다란 차이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搜查要員의 配分은 全體警察人力과 治安需要의 比率에 기초하여 增減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재 搜查部署에 배치된 搜查要員가운데 職務教育對象者 9,935명중 67.9%인 6,749명이 職務教育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특히 警査이하의 非幹部級은 73.5%에 이른다. 또한 職務教育履修者 3,186명 가운데에도 12.3%인 393명은 他部署에 배치되어 있어 教育履修後의 事後管理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補職管理에 적용되는 基準이 과연 合理的이고 現實適合性이 있는 가도 심도있는 分析이 요구되며 專門化를 위하여 채택된 特技制度의 實效性 여부도 새롭게 검토되어야 한다.

1989년 東亞日報 기자팀이 서울의 一線警察官 411명을 대상으로 設問調査한 바에 의하면 응답자의 60%가 警察官이란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薄俸과 激務 등 어려운 여건으로 轉職의 機會가 있다면 직업을 바꾸고 싶다는 警察官이 56%나 되었으며 특히 搜查

17) 搜查要員管理規程 第8條.

18) 搜查要員管理規程 第7條 第3項, 第4項.

19) National Advisory Commission on Criminal Justice Standards and Goals, op. cit., p. 233.

·刑事課 소속 警察官이 情報·對共課소속 警察官보다 轉職希望이나 不滿足度가 15% 가량 높아 士氣가 낮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²⁰⁾

또한 本人이 서울과 인천에 근무하는 搜查·刑事課소속 警察官 490명을 대상으로 設問調査한 바에 의하면 搜查部署에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要員은 50.6%로서 전체의 과반수를 넘었으나 他部署에의 轉補를 희망하는 要員은 25.4%였으며 어느 部署이건 상관없다는 의견도 20.8%나 되었다.²¹⁾

따라서 搜查人力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組織全體의 士氣를 진작하고 勤務能率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轉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 人事權者의 轉補權이 합리적으로 統制되어야 한다.

轉補는 補職에 대한 不適合의 해결, 業務量과 業務技術의 변화에 따른 人力의 配置調整, 公職의 沈滯防止, 組織의 목적에 대한 忠誠心 강화, 搜查要員의 教育訓練, 昇進의 機會提供, 개인적 選好에 대한 배려 등의 용도에만 활용되어야 한다. 특히 人事運營에 대한 불만의 소지를 極小化하고 人力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個人別 適性, 經歷, 教育訓練, 能力, 希望部署 등을 평소에 파악하고 이를 電算化하여 公정한 人事管理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 정기적인 人事移動이 定着되어야 한다. 수시전보를 지양하고 1년에 2회정도 정기적으로 轉補토록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이내에는 轉補를 제한하는 등 人事의 安定性이 보장되어야 한다.

(3) 特技分類制度는 경찰업무 수행의 生産性を 향상시키기 위한 專門化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그 分類와 運營에 있어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대상도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昇進은 下級公務員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金錢的 報酬이상의 것을 의미하며 특히 階級的 秩序를 유지하는 警察組織에 있어서는 그들에게 昇進의 公평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은 인간의 能力과 實

20) 東亞日報 1989年10月21日字.

21) 李瑛雨, "搜查警察의 專門化方案", 경찰의 범죄대처능력 향상방안 세미나 자료,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1990. p. 210.

力を 최고도로 발휘하는 기회를 주게 되는 것이며 그들의 士氣와 勇氣의 源泉이 되는 것이다.

警察의 昇進制度는 전체 警察官에게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內部昇進과 新規特採의 方法으로 이루어 진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實績主義와 開放型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런데 搜查要員의 昇進에 있어서는 內部昇進가운데 試驗昇進은 勤務與件上 業務量의 폭주로 기대하기 어려우며 審査昇進에 기대를 거는 경우가 많다. 특히 搜查要員의 審査昇進比率는 적어도 전체 審査昇進比率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²²⁾

1989년도 서울시警의 경우 刑事나 搜查部署가 情報나 對共, 警務部署보다 심사승진이 1/2정도에 불과하여 昇進에서 소외되고 있다.

本人이 調査한 바에 의해도 搜查要員은 現階級에서의 昇進可能性에 대해 悲觀的이거나 전혀 가망이 없다는 응답이 64.5%이며 搜查部署가 他部署에 비해 昇進이 안된다는 응답은 무려 88.1%로 나타나 승진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²³⁾

따라서 승진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1) 昇進 審査의 客觀化를 촉진하여야 한다. 昇進試驗이 계급에 관계없이 法律위주의 科目으로 되어 있는 바 직무수행의 實踐的 能力을 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 특히 昇進의 審査基準인 經驗, 勤務成果, 適性 등에 대한 評價方法의 信賴性和 妥當性을 높이고 評價項目의 配合比率決定에는 現階級에서의 實績基準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昇進審査對象者들이 昇進의 有資格者임을 書面으로 疏明하는 資料를 제출케 하여 銓衡資料로 활용하면 請託을 배제할 수 있고 不滿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2) 昇進積滯에 대하여 점진적 지속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搜查部署와 他部署와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適正昇進 TO를 책정하는 方案이 마련되어야 한다. 昇進에서 여러차례 脫落한 사람들에게 「待遇」의 칭호를 부여하여 昇進系統에서 비껴나게 하는 方

22) 搜查要員管理規程 第10條 第2項.

23) 李璜雨, 前揭論文, p. 211.

案도 고려하면 昇進過熱의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진정시키면서 오히려 현실에 있어서의 受容度는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搜查職에 있어서는 階級中心主義, 權限中心主義的인 組織文化를 FBI와 같이 任務中心主義, 能力中心主義로 이행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IV. 搜查警察의 教育訓練體制

1. 教育訓練體制的 現況과 問題點

「일선」은 教育訓練의 목적을 警察官이 모든 업무를 용이하게 수행하고 그러한 방법으로 그의 安全과 國民의 安全 및 滿足을 확보하도록 확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²⁴⁾ 따라서 教育訓練을 통하여 습득된 專門의 知識과 技術은 업무의 生産性과 科學性을 제공할 수 있어서 適法節次에 따른 檢舉率의 向上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搜查要員을 위한 教育課程은 搜查幹部研修課程과 專門化課程, 그리고 職務課程(搜查實務班, 調查實務班, 交通實務調查班, 鑒識實務班)이 있다.

搜查幹部研修課程은 警正, 警監級의 高級搜查幹部를 대상으로 24주에 걸쳐 100개에 달하는 科目을 전원 外來講師에 의존하여 실시되고 있다. 專門化課程은 警衛級의 初級搜查幹部를 대상으로 8주에 걸쳐 이루어진다.

警査이하의 非幹部級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職務課程은 調查實務班의 경우 教育期間이 8주이고 나머지는 4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어 幹部級에 비하여 그 기간이 짧다. 특히 職務課程은 教育期間에 비하여 科目數는 많아 충실한 教育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教育方法도 調查實務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講義式으로 진행되어 現場實習이나 分任研究 등이 소홀하다. 또한 教育機會도 해당 階級에 재직하는 동안 한번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24) O. W. Wilson and R. C. McLaren, Police Administration(N. Y. :mcGraw-Hill, 1972), p. 298.

案도 고려하면 昇進過熱의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진정시키면서 오히려 현실에 있어서의 受容度는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搜查職에 있어서는 階級中心主義, 權限中心主義的인 組織文化를 FBI와 같이 任務中心主義, 能力中心主義로 이행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IV. 搜查警察의 教育訓練體制

1. 教育訓練體制的 現況과 問題點

「일선」은 教育訓練의 목적을 警察官이 모든 업무를 용이하게 수행하고 그러한 방법으로 그의 安全과 國民의 安全 및 滿足을 확보하도록 확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²⁴⁾ 따라서 教育訓練을 통하여 습득된 專門의 知識과 技術은 업무의 生産性과 科學性을 제공할 수 있어서 適法節次에 따른 檢舉率의 向上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搜查要員을 위한 教育課程은 搜查幹部研修課程과 專門化課程, 그리고 職務課程(搜查實務班, 調查實務班, 交通實務調查班, 鑒識實務班)이 있다.

搜查幹部研修課程은 警正, 警監級의 高級搜查幹部를 대상으로 24주에 걸쳐 100개에 달하는 科目을 전원 外來講師에 의존하여 실시되고 있다. 專門化課程은 警衛級의 初級搜查幹部를 대상으로 8주에 걸쳐 이루어진다.

警査이하의 非幹部級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職務課程은 調查實務班의 경우 教育期間이 8주이고 나머지는 4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어 幹部級에 비하여 그 기간이 짧다. 특히 職務課程은 教育期間에 비하여 科目數는 많아 충실한 教育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教育方法도 調查實務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講義式으로 진행되어 現場實習이나 分任研究 등이 소홀하다. 또한 教育機會도 해당 階級에 재직하는 동안 한번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24) O. W. Wilson and R. C. McLaren, Police Administration(N. Y. :mcGraw-Hill, 1972), p. 298.

人權保護意識提高와 科學搜查技法을 습득하기 위하여 모든 搜查要員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체 搜查要員중 幹部級은 25.5%, 非幹部級은 73.5%가 搜查專門教育을 이수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우리 나라 搜查要員의 教育訓練體制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訓練需要에 대한 인식이 모호하고 불확실한 가운데 訓練을 供給하고 있기 때문에 劃一主義와 形式主義의 폐단과 訓練抵抗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教育期間의 基準設定이 모호한 가운데 幹部級에 비하여 非幹部級은 그 기간이 너무 짧으며, 동일한 課程에 있어서도 大卒者와 高卒者, 搜查經歷者와 非經歷者와의 구분없이 실시되며, 治安需要의 변화에 따라 기간의 단축과 중단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 訓練이 필요해서 訓練機關과 教育計劃이 마련되기 보다는 훈련기관과 교육계획이 있기 때문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訓練에 참가하는 搜查要員의 被動化를 조장하고 있다. 각 課程은 段階的인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중복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3) 教育訓練機關의 訓練技法은 전통적인 注入式 위주의 理論講義에 치중되고 있어 實習을 통한 現場適應能力이 부족하다.

(4) 유능한 教官要員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教官要員의 빈번한 交替는 물론 搜查經歷이 오래이거나 碩士學位이상의 學歷所持者가 教官要員으로 근무하려고 하지 않는 현상이며 教官을 양성하고자 하는 노력도 별반 기우리지 않고 있다. 또한 外來講師의 의존도가 높은 반면에 그들에 대한 調查研究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빈약한 訓練經費때문에 적절한 講師도 구하기 어렵다.

(5) 職場訓練은 業務量過多와 認識不足, 訓練技術不足으로 인하여 形式化 되어있다. 月1回정도 外部人士를 초빙하여 精神教育 강연을 들으므로써 이에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6) 國內外 委託教育은 보잘것 없으며 포괄적인 계획성을 결여하고 있다. 自費로 碩士學位, 博士學位 등을 이수하려 해도 業務量의 過多를 구실로 이를 容認하려 하지 않는다.

2. 教育訓練體制的 改善方案

搜查要員의 資質向上과 能力發展을 위해서는 이상에서 지적한 教育訓練與件을 개선하고 직무와 連繫性을 증진하기 위한 教育內容과 方法을 개선하여 專門人力의 양성에 주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서는 (1)教育訓練의 需要와 供給을 잘 부합시켜 教育訓練의 실질적 效用을 높이도록 訓練需要調査를 철저히 해야 한다. 따라서 訓練需要調査가 科學的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특히 訓練需要를 발견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資料蒐集의 方法으로 勤務成績評定資料, 搜查要員들의 訓練需要에 대한 自己評定資料, 그리고 여러 訓練課程의 科目一覽表를 배포하여 搜查要員들에게 원하는 科目을 표시하도록 하는 메뉴에 의한 搜查方法(menu survey)으로 얻어진 資料를 訓練需要決定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다루어야 被教育者와 監督者들이 訓練需要에 능동적으로 참가할 것이다.

특히 職務教育 未履修者에 대해서는 短期間內에 전원 教育이 가능한 計劃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教育期間 및 教育機會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2)教育訓練 프로그램에 대한 診斷評價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內實化를 기해야 한다. 教育訓練 프로그램은 직무와 연계되어야 하고 각 課程別段階性이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教育訓練 프로그램의 開發과 供給에서는 사회환경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도록 해야 한다.²⁵⁾ 각 課程別 履修科目 또한 과다함으로 選擇科目을 개방하여 訓練의 個人化라는 요청에 接近시켜야 하고, 教育方法에 있어서도 現場實習, 分任討議 등이 확대되어야 하며 模擬演習(simulation training), 役割演技(role playing)등의 現代的 技法이 동원되어야 한다.

(3)國內外 委託教育의 범위를 확대하여 高卒者에게는 放送通信大 또는 開放大學에, 大卒者에게는 碩士學位, 博士學位, FBI 등

25)Richard A. Talley. "A New Methodology for Evaluating the Curricula Relevaney of Police Academy Training",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Administration. Vol.14, No. 2, June 1986, p.112.

의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被教育者를 선발하고 이에 적합한 財政支援을 해야 한다. 또한 特殊專門機能인 會計, 公害, 麻藥, 컴퓨터 등에 대한 교육은 關聯 教育機關 및 團體의 委託教育을 통해 양성되어야 할 것이다.

(4) 우수한 教官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搜查要員중 碩士學位 이상자를 教官要員으로 활용하거나 理論과 實務를 겸비한 退職幹部를 招聘教官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또한 教官에게는 講義時間短縮, 研究費의 支援, 人事上的 優待, 研究教官制 등의 方法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5) 科學搜查專門人力을 양성하기 위하여 搜查幹部研修課程, 專門化課程, 職務課程 등의 再教育課程과 新規募集에 따른 新任巡警課程과 新任幹部課程 등이 綜合的이고 體系的으로 이루어지도록 刑事研修院의 설립을 촉진시켜야 한다.

(6) 職場訓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搜查活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教育計劃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V. 結 論

우리 나라 搜查警察은 지금까지 우리 社會의 治安確保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우려 왔다. 그러나 量的으로나 質的으로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民生治安 危害事犯에 대해서 統計的인 數値만으로는 효과적인 對應을 해 왔다고 볼 수 있으나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安全欲求에는 미흡함을 부인할 수 없다. 그 원인으로서는 政治, 經濟, 社會的 不安과 같은 外的 要因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警察 스스로의 內的 充實을 위한 노력이 부진한데도 그 까닭이 있다고 본다. 특히 社會가 多元化, 流動化되고 所得水準이 향상되면서 物質萬能主義, 享樂主義, 한탕주의가 만연하게 되고 이에 따라 物質的 欲望을 충족시키기 위해 國民의 生命과 財產까지도 서슴없이 짓밟는 強力事件의 빈발은 對犯罪戰爭을 선포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국민的 生命과 身體의 安全을 最一線에서 책임지고 있는 警察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에 對應할 수 있는 能力을 강구하

의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被教育者를 선발하고 이에 적합한 財政支援을 해야 한다. 또한 特殊專門機能인 會計, 公害, 麻藥, 컴퓨터 등에 대한 교육은 關聯 教育機關 및 團體의 委託教育을 통해 양성되어야 할 것이다.

(4) 우수한 教官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搜查要員중 碩士學位 이상자를 教官要員으로 활용하거나 理論과 實務를 겸비한 退職幹部를 招聘教官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또한 教官에게는 講義時間短縮, 研究費의 支援, 人事上의 優待, 研究教官制 등의 方法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5) 科學搜查專門人力을 양성하기 위하여 搜查幹部研修課程, 專門化課程, 職務課程 등의 再教育課程과 新規募集에 따른 新任巡警課程과 新任幹部課程 등이 綜合的이고 體系的으로 이루어지도록 刑事研修院의 설립을 촉진시켜야 한다.

(6) 職場訓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搜查活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教育計劃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V. 結 論

우리 나라 搜查警察은 지금까지 우리 社會의 治安確保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우려 왔다. 그러나 量的으로나 質的으로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民生治安 危害事犯에 대해서 統計的인 數値만으로는 효과적인 對應을 해 왔다고 볼 수 있으나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安全欲求에는 미흡함을 부인할 수 없다. 그 원인으로서는 政治, 經濟, 社會的 不安과 같은 外的 要因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警察 스스로의 內的 充實을 위한 노력이 부진한데도 그 까닭이 있다고 본다. 특히 社會가 多元化, 流動化되고 所得水準이 향상되면서 物質萬能主義, 享樂主義, 한탕주의가 만연하게 되고 이에 따라 物質的 欲望을 충족시키기 위해 國民의 生命과 財產까지도 서슴없이 짓밟는 強力事件의 빈발은 對犯罪戰爭을 선포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국민인 生命과 身體의 安全을 最一線에서 책임지고 있는 警察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에 對應할 수 있는 能力을 강구하

는 것이 가장 시급한 課題의 하나이다. 警察行政體制에 대한 政策的 改善은 政府當局이나 國民의 支援속에서 그 實效를 거둘 수 있는 것이지만 警察 自體의 부단한 노력으로 成果를 올릴 때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犯罪對應能力을 높이기 위한 政策的 對案을 摸索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搜查警察의 任用과 教育訓練體制의 改善을 검토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것이다.

유능한 搜查要員의 확보와 함께 教育訓練을 통한 專門的 知識과 技術의 습득은 犯罪抑止를 위한 生産性을 向上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國家나 市民의 입장에서는 搜查警察에 대한 適法節次에 따른 檢舉率의 向上을 요구하면서 이에 따르는 投資나 효율적인 人力 活用に 대해서는 消極的이거나 批判的인 視角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 모두가 안정된 사회속에서 안락하고 평온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警察活動에 대한 客觀的이고도 科學的 評價를 기초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前提될 때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犯罪에 對處하는 일은 警察自體만의 問題가 아니라 國民 모두의 問題이기 때문에 警察에 대한 否定的 批判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認識變化가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